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서왕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왕진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0.7%로 조사되었으며,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클라이언트 문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 및 사회복지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3조제7항에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태조사 실시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있다는 점과 이미 현행법 시행령¹⁾에서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시행령 이외에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